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7. 14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7. 1. (김영권 의원 대표 발의)
- 나. 상정의결
 -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1. 7. 14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구의원 : 김영권)

- 가. 제안이유
 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정책 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(안 제3조)
 -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(안 제4조)
 -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(안 제5조)
 -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(안 제6조)
 - 정책실명제 평가 등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,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집행의 최종단계까지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.

- 이러한 취지에서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)에서 ‘정책실명제¹⁾’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로써, 1998.7.1. 「사무관리규정」(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)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음.
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이 2009.2.27.제정되어 현재 까지 오고 있으나 ‘정책실명제’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정이 개정 전(2017.12.29.)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‘조례’ 또는 ‘규칙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규칙으로 운영하였으나, 개정 후에는 규정 제63조5²⁾제2항의 규정이 ‘조례’로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.

1)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3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4. “정책실명제”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2)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 또는 규칙</u>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로 정할 수 있다.</p>

○ 한편, 규정 제63.조의5제1항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<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>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록 그 제정형식은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 법규보충적 효력이 있음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제2항에 따른 위임조례로서 필수조례가 아닌 임의조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대통령령인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3조(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)제1항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. 제1항제6호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<정책실명제 운영지침>에 규정된 ‘국민신청실명제’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을 신청하고 다른 사업들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하는 것임.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 등 다른 대상기준 설정은 필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- 안 제4조(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)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. 다만,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- 안 제5조(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)에서는 <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>에 따라 자치단체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위

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·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³⁾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업무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 <사례>⁴⁾와 같이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8조⁵⁾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.

- 안 제6조(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)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및 공개에 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- 안 제7조(정책실명제 평가 등)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표창하려는 것임.

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2017.12.29. 법령이 개정됨에도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운영한 입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보임.

3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2.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
3.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4) <사례>

- 경기도, 인천광역시,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서울 자치구(중구, 용산구, 성북구, 강북구, 강동구, 은평구, 강서구, 구로구, 관악구, 송파구)

5) 정부업무평가 기본법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조례안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등에 대한 사항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.

○ 이번 조례안의 관련 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의거,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, 이미 해당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책임관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중복 기재라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됨.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